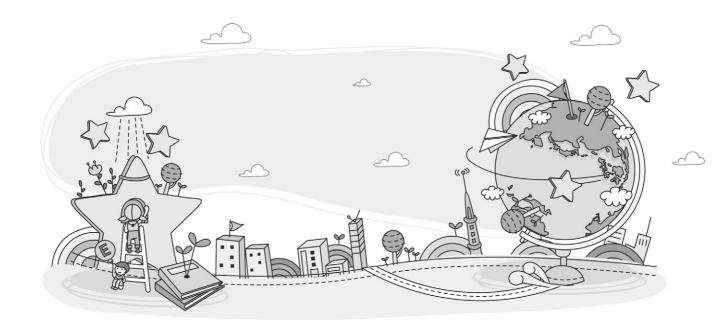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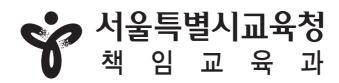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 · 일시: 2011, 12, 20(화) 14:00~16:30
- · 장소: 배화여자고등학교 강당

# 20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

- 2011.11.20 신규 위촉 학부모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 -





# 서울교육방향

# 교육지표

#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 시민 육성

# 정 책 방 향

-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

# 주 요 정 책

-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 참여와 협력의 교육 공동체 구축
- 투명하고 신뢰 받는 지원 행정 확립

# 역점과제

-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교육 비리 근절학생 인권 존중 및 교권 확립

# ϔ 일정 안내

# 1. 연수 개요

가. 일시 : 2011. 12. 20(화) 14:00 ~ 16:30

나. 장소 : 배화여자고등학교 강당

다. 참가 대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규위촉 학부모위원(학교별 1명)

라. 참가 인원 : 1,316명

# 2. 연수 일정 및 내용

시간	활동 내용	담당자	비고
13:40~13:50	<b>▶</b> 등록	정효나 주무관	
13:50~14:00	▶ 연수관련 안내	이성숙 장학사	
14:00~14:05	▶개회 및 국민의례	이성숙 장학사	
14:05~14:15	▶ 인시말씀	최병갑 (책임교육과장)	
14:15~15:30	▶ 학교성폭력의 이해와 대처방안	박혜영 총괄팀장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5:30~16:1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학부모위원의 역할	이대해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16:10~	<b>▶</b> 폐회		

<sup>※</sup> 연수 일정 및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음



#### Ÿ 아동 성폭력, 예방과 대처

1

박혜영(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총괄팀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역할 📗 17 Ÿ

이대해(책임교육과 학생인권·생활지도 장학사)

# 강의 1



## 이동 성폭력, 예쁘다 대対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총괄팀장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가해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성폭력이 한 학교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다수의 가해 아동이 한 명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통계들은 하루 평균 3명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아동은 내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아이 반 친구일 수도 있으며, 내 아이 옆 반 아이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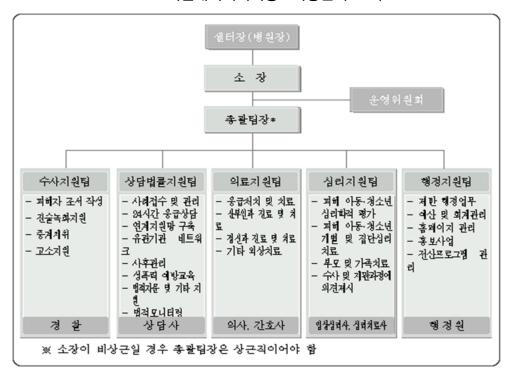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외부로의 노출이 쉽지 않다. 특히 가족 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어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 모르는 가해자든 친족 가해자든 그들은 어떻게 아동을 말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둘 사이의 이 비밀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서 성폭력의 악순환에서 아동을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와 교사이고, 피해 아동이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다.

# 1.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소개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 조직은 센터장인 병원장 아래 비상근 소장(정신과 교수)이 있고, 이하 총괄팀장, 상담법률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 수사지원팀의 5개 팀 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사지원팀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4명의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덧붙여 만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 녹화 시 진술을 분석하는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에서 파견된 진술조사전문가가 있다. 조직 및 각 팀의 구체적인 역할은 표1과 같다.



<표1> 서울해바라기여성 · 아동센터 조직도

## 2. 아동 성폭력이란?

- ☞ 또래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 놀리기, 치마 들추기, 화장실 영보기, 성기 노출, 성행위 강요, 성(性)과 관련된 신체부위 및 성행위 동영상 촬영 및 인터넷 유포 등이 있다.

## 3. 아동 성폭력 현황

## 아동 성폭력 피해자 통계

2009년도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여성가족부 산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민간 차원의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지원 통계에 의하면(표2), 2008년도 7세~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총 4,127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4.9%를 차지하였고, 13세~19세 미만 청소년은 7,758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통계는 7세~13세 미만은 4,37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를,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10,287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하였다. 장애 아동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08년도는 7세~19세 미만 아동이 868명으로 전체 장애인 피해자 중 37.3%를 차지하였고, 2009년도에는 1,540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전체 장애인 피해자 중 33.5%를 차지하였다.



<표2>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2009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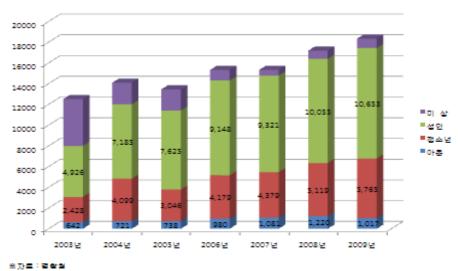
		피 해 자 연 령						
연도	계(명)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 세미만	19-60 세미만	60세이 상	미상
	전체	27,636	1,194	4,127	7,758	11,777	538	2,242
2008년	전세	100%	4.3	14,9	28,1	42.6	1.9	8,1
장애인	X FOIL OI	2,327	12	123	745	1,275	78	94
	3415	100%	0,5	5,3	32,0	54,8	3,4	4.0
	33,659 전체 100%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전세 2009년 장애인		2,8	13,0	30,6	44.9	1,6	7,1	
	Thomas	4,603	6	228	1,312	2,828	122	107
	100%	0, 1	5,0	28,5	61.4	2.7	2.3	

피해자 연령 (단위:명,%)

## 🗳 경찰 접수 현황

경찰청의 국내 연령별 성폭력 경찰 접수 현황을 보면(표3), 7세~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2008년도에는 7,330건이 신고 되었는데, 이는 상담 접수 건수인 11,885건과 비교했을 때 약 70%의 신고율을, 2009년도 7,782건으로 전체 상담 접수 건수인 14,662건과 비교해 약 50%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상담 접수 건수에 비해 경찰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경찰 신고 및 이후의 수사 및 법적 과정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3> 국내 연령별 성폭력 경찰 접수현황



#### 🗳 아동 성폭력 유형

아동 성폭력 중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학대 유형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2003년), 표4와 같이 성추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추행은 보통 아동 진술 외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성기 삽입(강간), 구강성교 등의 심각한 성폭력이 성추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는 적으나 그 피해가 심각함을 볼 때 발생 건수가 적다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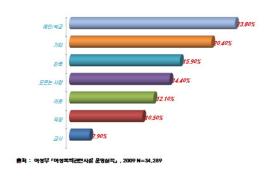
<표4> 이동 성학대 유형

#### 🗳 가해자 유형

여성가족부 2009년 통계에 의하면(표5), 성인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성폭력 가해자는 애인/학교가 가장 높고, 기타 다음으로 친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기타 모르는 사람, 이웃, 직장, 교사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201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보면, 모르는 사람과 미상이 15.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표6).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가 10.9%를 차지함은 여성가족부 전체 통계와 같은 경향을 보이며, 학교가 성폭력에 매우 취약한 장소임을 보여준다.



<표5> 가해자 유형



<표6>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4. 아동 성폭력, 덜 보고되고 있다.

- ◈ 덜 보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 대상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
  - 가해자가 말하지 못하게 협박한다: '우리 둘 사이 비밀이야, 비밀은 지키는 거야', '말하면 너나 네 엄마를 죽일 거야',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야', '말하면 네 나체 사진(강간 동영상) 인터넷에 올릴 거야', '말하면 학교 애들에게 다 소문낼 거야' 등
  - 아동은 수치심, 죄책감, 야단 맞을까봐 말 못한다 : 따라간 잘못 등
  - 친족 성폭력 경우 가족 해체(부모 이혼) 및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말 못 한다.
  - 아동의 혼돈이 말 못하게 만든다: 가해자들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예뻐서' 등의 이유를 대며 성폭력을 행한다. 또는 성폭력 전후로 사탕, 용돈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은 이것이 애정, 관심의 표현인지, 폭력인지 헷갈린다. 또 가해자에 의해 제공된 사탕, 용돈,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비난 받을까봐 말하지 못하게 된다.

#### 🗳 아동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례들

#### # 사례 1.2(친부 성폭력 사례)

-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엄마가 없는 날부터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서웠고, 아빠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면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난 고아원에 가야 할 거라고 했어요.' (고3)
-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빠가 엄마 목에 칼을 대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아빠가 내 멱살을 잡고 찍어 누르기도 해서 아빠가 무서웠어요.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아빠와 싸우다가도 엄마가 아빠와 같이 자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 아침 방에서 웃고 나오는 엄마를 보면 말할 수 없었어요.'(중3)

#### # 사례 3·4(계부 성폭력 사례)

- '(새)아빠가 이 사실을 말하면 엄마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고, 엄마가 이전같이 다시 목욕탕 때밀이 하면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고생할 거라고 했어요'(초4)
-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믿지 않았어요. (새)아빠는 날 예뻐해서 좀 만진 정도인데 내가 거짓말 한다고 했고, 엄마는 아빠 말만 믿고 내 말은 믿지 않았어요.' (중3)

#### # 사례 5(또래 성폭력)

'어느 날 새벽 동네 아는 남자애가 전화해서 집을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다며 돈을 갖고 나오라고 했어요. 돈 주러 집 앞에 나갔다가 어느 빈 건물 지하실로 끌려가 성폭 행 당했어요. 이후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해서 거부 할 수 없었어요. 임신했는데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어요'(중2)

#### # 사례 6(동급생 성폭력)

'아는 남자 아이들 여러 명이 에워쌌고, 그 중 대장격인 한 애가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고, 저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곤 다른 애에게 저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애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말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했어요.'

#### # 기타 사례들

'교사였던 외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성추행했어요. 외할아버지가 그런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아빠잖아요.'(중2 중퇴)

'이모부가 그랬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덮으래요.'

'내가 커서 언니랑 집 떠나면 되요. 삼촌이 잡혀가면 장애인인 아빠는 누가 돌보나요?' '오빠가 그런다는 사실을 말해도 아빠는 오빠 말만 믿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떠나야 하는데 난 집 떠나기 싫어요. 덮고 가고 싶어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중2)

'그 아저씨가 사람들이 알면 내가 나쁜 애라고 할 거라고 말했어요.'



## 5. 가해자는 누구인가

#### 🗳 친족 성폭력

- 친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친부가 전체 성폭력의 44%(2009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양상을 보인다. 그 밖에 계부, 친조부, 외조부, 친오빠, 사촌 오빠, 삼촌, 이모부 등 매우 다양하다.

#### 🗳 가족 외 성폭력

- 아는 사람이 제일 많다
  - 아는 성인 : 교사, 학원 강사, 과외교사, 친구 아빠, 아빠 친구, 아파트 경비원, 문방구 주인, 슈퍼주인, 가게 주인, 수영 코치, 목사, 인터넷 통해 만난 사람(?) 등
  - 아는 청소년 : 남자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선배, 오빠 친구, 친구 오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등

#### ○ 모르는 사람

- 연령은 또래부터 노인까지 다양하다.
- 초등학생 경우 강아지나 장난감, 게임기 등으로 유인하거나, 길을 가르쳐 달라거나 도와달라며 접근해서 범행 장소(가해자 집, 빈 집, 아파트 옥상, 빈 창고,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 건물 지하실, 공중화장실 등)로 유인한다. 또는 칼로 위협해서 범행 장소로 납치하거나 피해자 집에 주거 침입해 가해하기도 한다.
- 청소년들은 늦은 귀가 시 불상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상대와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 6. 성폭력 피해자 : 지적 장애 아동/남자 아동

## 지적장애이동

- 유인하기가 쉬워 가해자들의 목표물이 되며 피해율이 높고, 재피해를 받기 쉽다.
- 아동의 진술 능력이 떨어지고,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안되며, 90% 이상의 지적 장애아동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2011년 '도가니법'이 통과되며 장애인의 '항거불능' 입증 조항이 삭제되었다.
- 경계선급 지능(70~80) 아이들도 피해자가 되기 쉽다.
- 사회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 학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예방교육, 피해 시 조사 단계부터 증거 보완, 재피해 예방 교육까지.
- 가족의 무관심과 방임이 있는 지적장애 아동이 가장 위험하다.

#### 🗳 남자 아동

- 남자 아동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일부는 남자이다.
- 남자 피해자는 여자 피해자보다 더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로 인해 남자들의 성폭력 피해는 더 축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 남자는 여자 교사나 여자 상담사, 여자 의사에게 말하기 힘들어한다.
- 본 센터는 19세 미만 남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7. 아동의 성폭력 후유증

#### 🐠 신체적 후유증

- '특이소견 없음'이 가장 많다.
- 그 다음으로, 처녀막 파열, 질 손상에 따른 출혈, 질이나 항문 부위의 통증과 염증, 멍, 성병, 임신, 출산 등.

#### 

- 급성 &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보인다.
- 피해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분노, 수면장애, 우울, 짜증, 불안, 슬픔, 상실감, 무기력감, 사회적인 고립, 죄책감, 흥미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보인다.
- 부적절한 성지식 및 성행동(자위행위 등), 섭식장애, 가출, 자기파괴적 행위(자살 시도), 외톨이, 동물에게 잔혹함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
- 이런 후유증은 성인기로 연장되어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
  - <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한 20세 미만 251명의 성폭력 피해자 분석 >
  - · 68.48% 우울증 등 각종 정신장애 진단
  - · 41.1%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 35.6%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 13.2%는 과도한 자위행위 등 부적절한 성적 행동 보임



## 8. 어떻게 아동의 성폭력 피해를 인지할 것인가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아동 스스로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동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모나 교사가 인지하고 발견해야 한다. 어떻게 인지해서 발견할 것인가?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친족 내 성폭력 피해 아동 발견은 쉽지 않다.
- 학교 내 전문 아동 상담 인력 활용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이 문제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 관찰, 아동의 일기장, 아동의 그림(분노 표현, 남자 바지 지퍼, 여자 가슴 그림 등)

# 9. 피해 아동 발견 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 3672-0365)로 연락한다.

본 센터 외 경찰병원 원스톱 지원센터나 보라매병원 원스톱 지원센터로 신고해 산부인과적 증거 채취 및 치료,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이후 심리치료는 본 센터 외에도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마포구 소재 /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 가능)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센터들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회성의 가벼운 정도의 성폭력은 부모와 학교 선에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 🗳 피해 발견 후 즉시 아동을 데려 온다.

- 피해 후 72시간 이내 : 정자 검출 가능 시간, 응급피임약이 효과 있는 시간이다
-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상태 그대로 데려 온다 : 양치, 샤워, 배뇨, 배변, 뒷물, 음식물 섭취, 옷 갈아입기(X)
- 피해 상황 파악 : 가해자 특징, 인원수, 성폭력 형태, 장소, 강간시 사정이나 콘돔 사용 여부 등

## 10.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지원 과정

#### 🚳 STEP 1 : 초기 상담

- 상담사가 사건의 정황 및 파해 아동 및 가족의 어려움 등에 대한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초기 상담을 기초로 하여 이후 평가의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 피해가 의심(추측?)되나 말하기를 거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경우, 부모나 교사가 확인 후 데려오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에게는 더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산부인과적 증거물 채취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call 한다. 의사는 문진 및 검진을 하고 센터 간호사는 증거물 채취를 위해 응급키트를 사용한다. 강간 후 바로 오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증거물 채취가 어렵다. 성추행은 더욱 더 증거 찾기가 어렵다.
- 치료 제공 : 응급피임약, 성병 치료, 인공임신중절(임신 24주 이하만 가능함) 등

## 

- 아동 진술이 중요한 증거이다.
- 만 13세 미만 및 지적 장애인에서는 증거로서 진술 녹화가 필수적이다. 이유는 아동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 진술녹화는 아동진술조사전문가의 참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수사는 아동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한다(특별한 경우 서울지방 경찰청 1319팀이 진행하기도 한다).

#### STEP 4 : 소아정신과 평가

- 산부인과적 증거가 없거나 약할 경우, 또 아동 연령이 어리거나 지적장애 아동으로 진술이 어려울 때 소아정신과적 평가가 중요하다.
- 저학년 어린 아동은 놀이치료 통해 성폭력 여부를 평가하기도 한다.
-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약물치료를 한다.
-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입원해서 평가 및 치료가 이루어진다.
-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신과 치료도 제공된다.

#### 

- 심리평가 자료는 아동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서적인 손상에 대한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한다.
- 심리평가를 기반으로 심리치료(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를 제공한다.
- 피해 아동 양육 관련 부모상담 및 교육을 한다.

#### 

- 피해 아동 및 가족 쉼터 연계
- 무료 법률 구조
- 법정 모니터링 및 피해 아동이나 부모의 법정 출두 시 신뢰동석인으로 참여한다.
- 경제적 지원 연결 등

#### 🗳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 국비로 지워된다.
- 300만원까지는 심의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300만원~500만원 사이는 센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500만원 이상은 관할 구청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비가 지원된다.

## 11. 아동·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아동 · 청소년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아동 · 청소년 가해자 수는 2,934명.
- 성인기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치료가 필요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가해 행동은 폭력 정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나 아동의 깊은 문제의 한 표현일 뿐이다. 또한 가해 아동 가족의 심각한 문제의 한 표현일 뿐이다. 이를 진심으로 생각해 용서해주고 끝난다면 가해자가 추후 상습범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어 이는 가해자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가벼운 정도의 가해일 경우는 아하 청소년 문화센터나 위센터 등 지역사회 가해자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으나, 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소아정신과 치료로 연계해야 한다. 가해자는 '품행장애'로 진단될 수 있고, 때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린 가해자 방치 시 성인기에 사이코패스로 발전할 수 있다.
-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

# 12. 학교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 ◈ 학교 역할 매우 중요하다

- 교장, 교감선생님부터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생활지도 선생님, 모두 중요하다.
- 그러나 아동이 가장 친밀하다고 느끼고, 피해 아동 보호에 관련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한 교사가 피해 아동과 대화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
- 학교와 학부모, 학생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
- 학교는 피해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외부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 🗳 가해자 분리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가해 아동이나 가해 교사가 한 학교에 있을 때 그렇다.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다. 가해자를 접촉하게 될 경우, 또 가해자를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깜짝 깜짝 놀람, 불안, 두려움, 불면, 집중력 저하 등)이 악화된다. 결국 피해 이동이 학교를 떠나게 된다.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화간'임을 주장한다. 또 평소 피해 학생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다.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가해자 가족이 학교를 위협해도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증거가 있냐" "애들 말만 어떻게 믿냐", "걔(피해자)는 거짓말도 잘하는 애라더라", "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애가 잘못 했다고 징계를 할 수 있냐, 만약 아니면 (법원 판결) 그땐 가만 안 있겠다" ….
- 이에 대한 학교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피해 아동과의 분리를 논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로, 아동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만 10세~14세는 촉법소년으로 1호~10호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 이하 연령에서는 학교에서의 분리 조치와 함께 소아 정신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피해자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를 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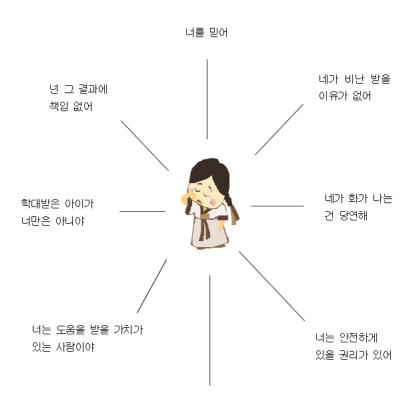
- 피해자가 피해 사실 노출로 인한 어떤 2차 피해도 아동에게 있어서는 안된다.
- 2차 피해만 안 생겨도 아동의 회복이 빠르다. 아동을 더 망가트리는 것이 2차 피해이다.
- 2차 피해 발생 시 학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 치료적인 메시지는 아동의 피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이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일관적으로 주어야 한다.
- '네 잘못이 아니야': 아동은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는 가해자가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입한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야': '넌 아주 작고, 그 사람은 너보다 훨씬 더 크잖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를 속였고, 다른 아이들도 속였어'. 등의 말로 아동이 속아서 피해를 당하였고, 나쁜 사람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왜 따라갔니?', '왜 소리 지르지 않았니?', '왜 빨리 말하지 않았니?'와 같은 말은 아동에게 일부 책임 있다는 말로 아동은 자신이 비난 받는다고 느끼고 이는 아동의 죄책감을 더 나쁘게 하며, 결국 아동의 치료를 방해한다.
- '네가 유일한 피해자는 아니야' : 다른 아동도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아동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 '**사실을 말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그들은 옳은 행동을 했고, 말함으로서 생기는 어떤 결과(부 등의 가해자 구속이나 가해 학생의 학교에서의 분리 등)에도 책임이 없다는 말을 자주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 <표 7> 피해 아동에게 주어야 하는 치료적인 메시지



년 더럽거나 무례하지 않아 년 사랑스러워



#### 🗳 피해 아동 가족 지지

- 부모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 교사와 학부모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지는 치료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서는 안된다.

##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역할

-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 회하자 및 그들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매우 필요하다.
  - 다른 학부모나 자신의 자녀 등에게 피해 학생의 피해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말해서는 안된다.
  - 성폭력 피해 관련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행동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고소당할 수 있다.

# 강의 2



# 站正军球的机制制制 钻井卫利利의 鸣转

이대해

책임교육과 학생인권·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 1. 학교폭력의 특징

- 학교폭력은 최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높아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학교 내의 폭력이 집단화, 조직화 되는 경향. 폭력서클은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거나 학교 간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폭력의 집단성은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점차 흉포화, 범죄화 되어가는 원인이 됨
- 학교폭력은 일부 소수 문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수 있는 비행행동이 되고 있음(언어폭력, 따돌림 등이 가장 빈번). 특히 이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유형의 폭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함.

# 2.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u>학생 간에</u>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사건에 학생 아닌 자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 자치위원회 처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설] 학생신분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학교폭력사건에 학생신분이 아닌 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아닌 자를 제외한 가해·피해학생에 대해서만 각각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한다.

#### 학교폭력 유형 이해하기

#### ① 신체폭력

-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찌르고 목 조르는 행위
- 꼬집기 손가락 뒤로 꺾기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때리기
- 칼이나 컴퍼스, 몽둥이, 의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

#### ② 언어폭력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 학생에게 언어적 공격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폭력이 된다.

- ·성격공격 ·능력공격 ·배경공격 ·생김새공격 ·저주 ·희롱
- 조롱
   협박
   욕설

#### ③ 금품갈취

-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기
- 상대방에게 '옷이 예쁘다'는 말을 온근히 계속하면서 입고 있는 옷을 빼앗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교통카드, 핸드폰 등 개인물품 빼앗기

#### ④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 골탕 먹이기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 ⑤ 괴롭힘

- 언어적 상황적 협박과 강요
- 두려움을 주는 일 · 좌절감을 주는 일 · 겁 주는 행동
- 무시하기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낙서를 하는 행동
- 집적거리는 행동 조롱하는 행동 속임수
-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행동

#### ⑥ 성폭력

• 성폭행 :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성기 삽입)를 강제로 하는 것 청소년의 경우 유사 성교행위, 이물질 삽입 등도 해당

• 성추행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

• 성희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 ⑦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예- 반 학생들끼리 안티카페를 만들어, 한 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서로 공유함)

•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예-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의 실명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고 소문으로 떠도는 사실을 올리는 것)

• 사이버성희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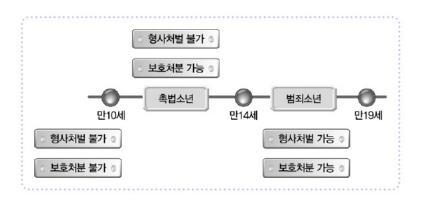
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예- '버디버디'의 채팅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야한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

- 문자로 '너 죽여버린다', '너는 너무 싸가지가 없다'라고 보내는 것
-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상대방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

#### ⑧ 폭력서클

-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 다른 학교 폭력서클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 3. 연령에 따른 형사처벌의 이해



# 4. 보호처분의 이해

○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 소년부판사가 심리하여 이를 소년의 교화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성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하는 처분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0가지 종류.

징계	내용
감호위탁처분	가해학생을 보호자나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고아원 등의 시설에 인계하는 것인데,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강명령	유죄가 인정된 비행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 단기 보호관찰소년에게는 50시간 이내의,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사회봉사명령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를 명하는 것. 단기 보호관찰소년에게는 50시간 이내,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다.
단기 보호관찰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월1회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도록 하여 면접과 상담 등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장기 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처분과 달리 2년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월에서 1년간 '서울시립아동보호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소년의료보호시설 의 위탁	가해학생의 심신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수용으로도 교화·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부과
단기 소년원 송치	가해학생의 행위가 과도하여 보다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도록 하는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간 소년원에 수용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

# 5. 학생 징계(선도) 관련 법률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 학교규칙(생활지도규정 등)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비교

구분	성격	구성	기능		
선도(징계)위원회	자치기구	그의 드	학생비행 사안 처리		
선도(정계/귀현외 	샤시기구 	교원 등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		
학교폭력대책	버저기그	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사안 심의		
자치위원회	법정기구	외부인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 11조에 근거)		

# 6. **자치위원회의 구성**(제13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함
- O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1. 해당 학교의 교감
  -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 4. 판사·검사·변호사
  -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공고 등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 다만, 학교 시설 등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 ※ 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학부모위원 수

자치위원회 전체위원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학부모위원 수(과반수)	3명	4명	4명	5명	5명	6명

#### ■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위 원 장 수 위 원 수 간 사

•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
• 회의 주재
• 간사 1인 지명

#### 생활지도부장(또는 학생부장), 책임교사 및 간사의 관계

생활지도부장이 책임교사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가 간사가 되는 것이 좋다.

생활지도부장이 책임교사직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생활지도부장은 자치위원이 되고 책임교사직은 생활지도부 기획이나 사인계 등을 맡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책임교사가 간사의 역할도 담당하는 것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 요건(제13조제2항)

-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세분화완화하여 법률로 신설·강화함**

- 특히,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규정 내용을 **학생·학부모에게 고지·안내**해야 할 것임

## 8.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절차

#### 🚳 사안발생시 절차별 진행



🗳 피해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했을 경우

#### 학교측의 대처

- 학부모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 기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
- 피해·기해학생을 격리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기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 자치위원회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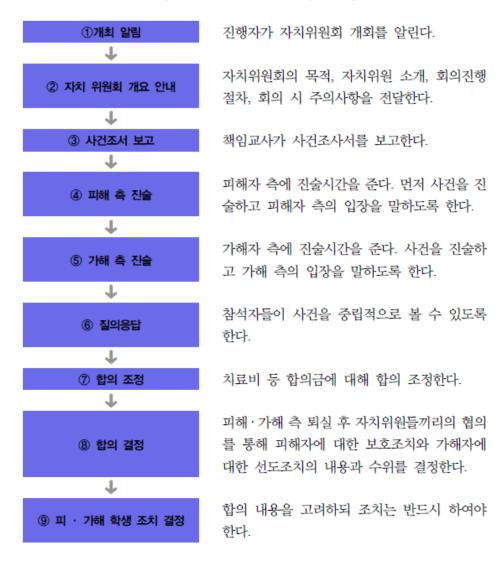


- ① 개회사 : 위원장 위원장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알린다.
- ② 참석자 소개 및 자치위원회 안내: 책임교사
  - 자치위원회 목적
  - 진행절차
  - 주의사항 전달:
  - 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나.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됨을 알린다.
  - 다.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 참석자 소개
- ④ 사안 보고: 책임교사 사안 조사 결과 보고를 한다.
- ⑤ 피해측 진술(사안진술, 요구사항) 및 질의응답
  - 사안을 진술하고 피해측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서 답변한다.
  - 퇴장
- ⑥ 가해측 진술(사안진술, 가해측 입장) 및 질의응답
  - 사안을 진술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한다.
  - 퇴장
- ⑦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처벌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

- ⑧ 학교장 결재 :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재
- ⑨ 피해·가해측에 결과 통보:양식에 의거 통보 (양식 25)

#### [ 자치위원회 전체 진행과정 ]



#### ※ 주의사항

- 진술시 시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한다. 객관적인 시실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을 경우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학부 모와 가해자 학생만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양측이 회의 전까지는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직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학생 또는 학부모간 고성이 오가거나 폭행이 발생하여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학교장에게 처리 요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해 결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학교장에게 통보(해당학생에 대한 조치권 등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



#### 🗳 학교장의 처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은 수정 처리 또는 거부 할 수 없음.
- 이와 달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수정 처리 또는 거부가 가능 (그렇지만 가급적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다).

##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 피해학생의 보호
  -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6가지, 수개의 조치 병과 가능)
  - ① 심리 상담 및 조언 ② 일시 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학급 교체
- ⑤ 전학 권고 ⑥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가지, 수개의 조치 병과 가능)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의 금지
- ③ 학급 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⑨ 퇴학처분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초,중,특수)은 퇴학조치 불가
-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 일수에 산입 가능
- ※ 1.2.5호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가능 (즉시 보고 추인), 미이행시 징계
- ※ 출석정지는 '**출석일수 기준**' 10일 이내임
- ※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은 **별도로 실시**해야 함
-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일반 학교폭력보다 한단계 더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출석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에 의해 특별교육도 동시에 부과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출석정지기간 내에 특별교육일자를 정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교육기간은 출석일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일수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석정지기간과 특별교육기간은 분리하여 정하여야 한다.

에 2009년 3월 23일(월)에서 26일(목)까지 4일간의 출석정지를 결정하고 특별교육 1일을 결정한 경우 이러한 특별교육을 출석정지기간 내에 이행하게 한다면 출석정지는 사실상 3일을 부과한 것이 됨

####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②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 10. 기타 심의시 유의사항

#### 🗳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제13조제3항)

- 자치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회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작성·보존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자치위원회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에 대비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유의

#### 🔹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등(회의록 공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 22조). 또한 이러한 비밀 누설이 동시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 법 제 307조 1항).

이 외에도 해당 직장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과는 별도로 비밀누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비공개 및 비밀 준수 철저

○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 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함

- O 회의록은 법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및 공개해야함
  - 회의록 공개는 법률 개정 이전 작성된 자료도 공개
  - 회의록 공개는 신원 확인 및 정보공개 절차 등을 준용하여 적법하게 처리※ 열람, 복사 등 대장 비치, 회의록 공개시 개인 정보 삭제후 공개 및 공개 자료 보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 제③항 및 벌칙 조항 고지

## 11. 학부모위원의 참여확대의 의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소집요건 완화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
- O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해 및 참여기회 확대
- O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 [참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찾아보기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